#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43

발의연월일: 2023. 2. 10.

발 의 자 : 홍익표 • 이상민 • 김민철

김윤덕 · 김영배 · 이원욱

이용빈 · 강훈식 · 이장섭

신정훈 · 한병도 · 이동주

이탄희 • 박상혁 • 홍기원

윤관석 · 임호선 · 장철민

이소영 • 이병훈 • 소병훈

윤영찬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육단체의 개별 안전규약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마련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

여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체육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 려는 경우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체육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당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점검을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및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에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